原本對照畢

정 관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정관

제　　정 : 1994.12.21.(복자 65115-402)
1차 개정 : 1997. 2.20(복자 65115- 81)
2차 개정 : 1997.11.14.(복정 65115-384)
3차 개정 : 1999. 4.21(복정 65115-208)
4차 개정 : 2003. 1.13(복정 65115- 32)
5차 개정 : 2003. 4. 3(복정 65115-240)
6차 개정 : 2003.12.30.(복지정책과- 6)
7차 개정 : 2004. 6.22(복지정책과-2131)
8차 개정 : 2004. 8. 3(복지정책과-2698)
9차 개정 : 2005. 3.22(복지정책과-1110)
10차 개정 : 2006. 1. 9(사회정책기획팀-169)
11차 개정 : 2006. 5.18(민간복지협력팀-1623)
12차 개정 : 2010.12.23.(사회서비스자원과-4006)
13차 개정 : 2014.12.15.(사회서비스자원과-7482)
14차 개정 : 2016. 3.25.(사회서비스자원과-1647)
15차 개정 : 2017. 4.11.(사회서비스자원과-2683)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법인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술연구 및 장학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68(장충동2가) 에 둔다.
② 본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1. 인천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57(항동1가)

제 4 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복지관련 연구소 설치,운영 및 장애인 지원사업
2.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3. 질병· 장애·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4. 학술연구 지원 및 장학사업
5. 의료지원, 재활기기 개발 및 보급사업
6. 특수교육 . 재활 및 복지에 관한 연구지원 및 연수사업
7.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사업
8.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본 법인은 제1항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수행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별지)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 7 조 (자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경비)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기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수익
2. 기부금 및 보조금
3.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 9 조 (회계의 구분)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제 10 조 (회계의 처리) 본 법인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12 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13 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14 조 (잉여금의 처리)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차입금변제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15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①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 인
2. 감사 2인

② 본 법인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 등)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9 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상임이사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제 20 조 (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위하여 법인의 제반업무를

시행한다.
②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1 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2 조 (감사)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시행한다.
1. 본 법인의 재무상황 및 회계의 감사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을 이사에게 요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본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와 재무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대표권의 제한) 본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제 24 조 (임원의 대우) 본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5 조 (겸직금지) 본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 4 장 이사회

제 26 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27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목적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28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 제22조 제4호에 의한 문서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문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된 때 또는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전항의 기간을 7일 이상 초과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의 개회와 일반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 조 (특별의결 정족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 법인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3.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 31 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

제 32 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 33 조 (정관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해산) 본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정산 후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6 조 (청산인)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청산인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법인의 이사나 감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6 장 보 칙

제 37 조 (사무국) ① 본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무국은 법인의 제반 행정업무 및 목적사업과 부속연구소, 수탁운영기관, 수익사업, 비상근자문기구 및 봉사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38 조 (공고) ① 본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②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39 조 (준용규칙)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②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조 직

제 40 조 (조직의 구성) 본 법인의 조직은 이사회, 사무국, 부속연구소, 수탁운영기관, 수익사업기관과 비상근자문기구 및 봉사단체로 구성한다.

제 41 조 (이사회) 본 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그 권한 및 규정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정한다.

제 42 조 (부속연구소)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장애 아동의 교육과 복지, 재활 분야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② 부속연구소 조직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3 조 (수탁운영기관) ① 본 법인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관련 공익시설의 수탁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4 조 (수익사업기관)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5 조 (비상근자문기구)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비상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6 조 (봉사단체) 본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봉사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1994.12.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 2.20)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4)

(시행일) 이 정관은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3. 1.13)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3)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22)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3)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22)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9)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3)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5)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기 본 재 산 목 록

(단위: 원)

구 분	출 연 일 자	출연내용	평가금액	출 연 자	비고
설립출연	94년 11월 17일	현 금	2,000,000,000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주)	
추가출연	95년 12월 30일	현 금	1,800,000,000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주)	
추가출연	95년 12월 30일	현 금	500,000,000	(주)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추가출연	97년 1월 30일	현 금	50,000,000	(주)파라다이스남문	
무상증여	03년 11월 20일	주 식	1,572,574,000	전락원(개인소유자산)	
무상증여	04년 5월 31일	주 식	4,170,000,000	전락원(개인소유자산)	
무상증여	04년 11월 3일	주 식	657,180,000	전락원(개인소유자산)	
추가출연	05년 12월 26일	주 식	217,500,000	(주)파라다이스	
합 계		현금 및 주식	10,967,254,000		